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朴 贊 殖*

目 次

- I. 머리말
- II. 濟州 지역 進上의 종류와 내용
- III. 濟州 지역 進上 이행의 실태
— 「濟州啓錄」을 중심으로 —
- IV. 進上의 부담과 濟州民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전기 인민의 국가에 대한 부담은 田稅·貢物·役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밖에 進上이 있다. 「經國大典」戶典 稅貢條에,

凡收貢之物 限翌年六月上納 (註略) 祭享進上及節物 竝赴時

라고 있고, 同 魚鹽條에는,

諸道諸邑諸浦魚筭 所出魚物 薦新進上常貢外 質穀

이라고 보인다. 즉, 祭享進上은 薦新을 가리키고, 節物은 進上을 말한다. 祭享進上, 즉 薦新은 宗廟·原廟 등에 대한 제사의 공물을 말한다. 그리고 節物 혹은 進上은 物膳進上을 의미한다. 결국 進上이라는 것은 貢獻과 같은 의미로

*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서, 奉上的 뜻을 가지고 아래로부터 위로 進獻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 제사에 사용되는 공물 및 국왕·왕비에 대한 供上은 대체로 중앙 機關의 管轄로 규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地方官民으로부터 歲貢과는 별도로 기타 所産에 따라서 상납한다고도 규정되어 있다. 결국 진상물은 거의 대부분 일반 民戶의 부담으로 징수되었다. 조선후기 大同法의 시행에 따라서 진상은 원칙적으로는 공물과 같이 田結에 대한 부과로서 미곡으로 징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祭享薦新·物膳進上 등의 명목은 그대로 남아서 1894년 甲午改革 때까지 이르렀다.

종래 조선후기 貢納制의 연구는 주로 大同法의 실시와 그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진상의 이행 실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여겨진다. 특히 한 지역에서의 진상 이행 실태와 그에 따른 지역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아 왔다. 따라서 발표자는 조선후기에 와서도 稅制 가운데 여전히 진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제주도를 거론하여 볼까 한다.

제주도의 경우 대부분의 공물 품목이 진상 품목과 일치됨으로써, 조선후기에 와서도 진상의 부담이 막중하였다. 계속되는 진상 부담의 가중에 따라서 제주도민들 가운데 다수는 진상물을 부담하는 소위 '六苦役'층으로 존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신분과 직역의 측면에서 寺奴婢, 즉各司奴婢의 형태로 존재하였는데, 18세기까지 제주도민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었다(1704년 당시 제주도 인구 43,515명 가운데 23,948명). 이들 시노비는 1801년의 공노비 해방책에 의해서 대부분 상민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진상 부담의 방법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 수 없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19세기 제주도 진상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도 진상의 종류와 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濟州啓錄』을 중심으로 하여 19세기 진상 이행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진상 부담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제주도민의 존재 형태의 일면을 파악하고, 또한 19세기에 빈발하였던 민란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II. 濟州 지역 進上의 종류와 내용

원래 進上의 종류에는 物膳進上(①朔望進上 ②別膳·日次物膳 및 到界·瓜遞進上)과 方物進上(①名日方物 ②行幸講武方物), 祭享進上(薦新), 藥材進上, 鷹子進上, 別例進上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제주도에 부과되었던 것은 물선진상, 방물진상, 제향진상, 약재진상 등이었다.

1) 朝鮮前期(大同法 시행 이전)

조선초기 世宗 3년 이전까지도 진상의 품목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듯하다.

禮曹에서 아뢰기를 “(중략) 濟州의 柑子·柚子·洞庭橘·乳柑·青橘·蒙藥·榧子·早薑·圓鮑·引鮑·條鮑·槌鮑·오징어 등의 물건도 계절에 따라서 進上하게 하십시오” 하니, 임금이 濟州에서 進上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명하였다. (『世宗實錄』 世宗 3년 정월 병자조)

그러나 세종대 이후로 진상 품목이 확정되어 갔다(약재류 - 『世宗實錄』 世宗 7년 7월 무인조 ; 진주 - 같은 책, 世宗 8년 11월 병오조 ; 鞍籠·獐鹿皮 등, 감귤 - 같은 책, 世宗 9년 6월 정묘조). 세종대 확정된 진상 품목은 다음의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土貢〉 玳瑁·膏·牛毛·榧子·柑子·柚子·乳柑·洞庭橘·金橘·青橘·山橘 / 全鮑·引鮑·引鮑·槌鮑·條鮑·烏賊魚·玉頭魚 / 昆布·山柚子木·二年木·榧子木 / 良馬 / 藥材·陳皮·山藥·石薺·草薺·川練子·白芷·八角·零陵香·五倍子·梔子·香附子·木瓜·柴胡·青皮·白扁豆·草烏頭·海東皮·厚朴·烏魚骨·杜冲·蔓荊子·石決明·半夏·黃菊·鹿茸·舶上·茴香·枳殼(『世宗實錄地理志』 濟州牧)

그리고 조선전기 제주도 진상의 종류와 수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金尚憲의 『남사록』(1601)에 잘 나타나 있다.

A-① 濟州의 貢案에 있는 매년 別進上 - 槌鮑 3,030첩, 條鮑 230첩, 引鮑 910첩, 烏賊魚 680첩, 司宰監 공물 - 大灰全鮑 500첩, 中灰全鮑 945첩, 小灰全鮑 8,310첩, 別貢物 - 大灰全鮑 1,000첩, 中灰全鮑 700첩, 大靜 - 大灰全鮑 500첩, 中灰全鮑 250첩 旌義 - 大灰全鮑 500첩, 中灰

全蠟 195첩. 이것은 다 삼읍의 浦作으로부터 취하고 기타 海菜 및 수령의 봉송하는 수량은 이 한에 있지 아니하므로 전도의 물력이 여기에 없어진다.”(『남사록』 권1, 9월 22일조)

② 本州의 1년 24運 封進 수, 진공 수(柚子 960 柑子 29,470 金橘 1,420 乳柑 2,800 洞庭橘 3,040 山橘 540 青橘 530 唐柚은 결실의 다소에 따라 封進함. 掌化署의 所納은 歲前에 柚子 280 柑子 500 金橘 1,000 乳柑 700 洞庭橘 2,000, 歲後에 柑子 500 山橘 500 青橘 2,000. 大靜은 柚子 180 柑子 530 金橘 500 乳柑 400 洞庭橘 750 青橘 50. 旌義는 柚子 175 柑子 525 金橘 500 乳柑 390 洞庭橘 700 青橘 750) 매년 牧使의 別進上은 香葦 28두 白蠟 24편 童子香○ 7두 梔子 120근. 牧使 到任進上 白蠟 20편. 遞任進上 白蠟 48편 梔子 30근 馬粧諸具 10부 毛 3정10부 歲貢貢馬 馬粧諸具 20부 毛 3정10부 草 3정60부 毛鞵 8부 草鞵 23부 紅勒 60부 眞勒 170부 毛索 8부. 判官 遞任進上 毛 3정3부 草 3정3부 毛鞵 3부 紅勒 3부 眞勒 3부 毛索 3부. 旌義 縣監 遞任進上 毛 3정2부 草 3정2부 毛鞵 2부 紅勒 2부 毛索 2부. 大靜 같음. 이것은 다 군사에게 책납시키는 것이다. 기타 소소한 것은 다 셀 수 없다.(『남사록』 권4, 11월 20일)

즉, 위의 『남사록』의 기록을 통하여 대동법 실시 이전의 제주도 진상의 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제주도의 공물 상납은 주로 別貢物과 더불어 別進上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A-①). 대동법 시행 이후에 常貢은 대부분 米納으로 바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別貢과 進上은 계속 현물로 수납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제주도의 경우 대동법이 시행된 후에도 현물로 상납하는 형식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굴의 봉진은 24運으로 나누어져서 생산 시기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A-②). 그러므로 이미 대동법 시행 이전에 굴과류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선후기의 경우 20運으로 상납되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朝鮮後期(大同法 시행 이후)

조선후기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도의 진상 부담의 실상을 알려 주는 자료는 적지 않다. 우선 각 시기별로 상납되었던 진상 품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7세기 - 李元鎮, 『耽羅志』(孝宗 4년, 1653)

<표 1> 17세기 제주도 진상의 내역

구 분	진 상 시 기 및 내 역	
營進上到界	白蠟 24편	
月令	2월	槌鯨 265첩 條鯨 265첩 引鯨 95속 靑橘 1250개
	3월	槌鯨 240첩 引鯨 85속 미역 40속 미역귀 2석5두
	4월	槌鯨 760첩 引鯨 170속 香鯨 2석1두5송
	5월	同上
	6월	槌鯨 1108첩 烏賊魚 215첩 引鯨 170속
	7월	槌鯨 680첩 烏賊魚 430첩 引鯨 170속
	8월	槌鯨 680첩 烏賊魚 258첩 引鯨 170속 權子 14되 半夏 31근 石決明 2근 海桐皮 6근
	9월	槌鯨 425첩 烏賊魚 172첩 引鯨 85속 柚子 1850개 油安息香 33근
	酸物	초운
2-7운		柑子 각 3,540개 金橘 각 300개
8운		乳柑 1,400개 洞庭橘 980개 柑子 1,290개
9-18운		柑子 각 3,300개 乳柑 각 300개 洞庭橘 각 340개
19-20운		柑子·乳柑·洞庭橘은 위와 같음. 山橘 760개 唐柚는 결실 수에 따라 진상
歲抄	白蠟 24편 新香鯨 11말2되 鴨子 長脯 圓脯 각 32조 獐皮 11령 梔子 160근 早薑 132첩 陳皮 48근 靑皮 30근 橘核 7량 橘葉 6근 枳殼 22근 香附子 78근 無患子 8량 石斛 11량 枳實 6근 練根 1근 4량 練實 4량 厚朴 32근 木槿子 4,400개	
遶任	馬(牧使·判官 각 3필, 兩縣監 각 2필) 馬裝 10부 中小鹿皮 52령 白蠟 42편 鹿長脯 快脯 각 64조 鹿尾 62개 鹿舌 64개 無灰木 26주	
三名日	誕日 冬至 正朝에 말 각 20필 馬裝 11부 結弓獐皮 60령 東西追鹿 각 15명	
年例馬	8필	
歲貢馬	100필	

(各司奴婢 身貢은 제외시킴)

② 18세기 초 - 李衡祥, 『南宦博物』; 『濟州民瘼狀』; 『耽羅巡歷圖』(肅宗 29, 1703)

B-① 1년에 바치는 말이 4-5백 필이고 각 鯨이 9천여 첩, 오징어가 7백여

침, 酸果(橘)가 3만 8천여 개, 馬鞍 4-5십 부, 鹿皮 5-6십 령, 獐皮 50 령, 鹿舌 5-6십 개, 鹿尾 5-6십 개, 鹿脯 2백여 조, 各種 藥材 4백 7십여 근, 馬衣諸緣 6백8십여 부, 기타 菓古, 櫃子, 白蠟, 山柚子, 二年木, 弓俗, 筒箇, 螺鈿, 鮑甲, 驄結只, 涼臺帽子 및 梳省, 杉板 등

② 槌嫂 3천9백여 침, 條嫂 2백6십여 침, 引嫂 1천1백여 침, 灰全嫂 3천 8백6십여 침, 도합 9천 1백여 침과 오징어 8백 6십여 침 및 粉薑, 芡 薑, 薑耳 등의 일이 모두 이 80명(補作人)에게서 나옵니다

③ 御乘馬 20필, 年例馬 8필, 差備馬 80필, 誕日馬 20필, 冬至馬 20필, 正朝馬 20필, 歲貢馬 200필, 凶駕馬 32필, 駕駘馬 33필, 黑牛 20수 9월부터 2월까지 薦新 2차, 진상 21운

唐金橘 678개, 柑子 25,842개, 金橘 900개, 乳柑 2,644개, 洞庭橘 2, 804개, 山橘 828개, 青橘 876개, 柚子 1,460개, 唐柚子 4,010개, 梔子 112근, 陳皮 48근, 青皮 30근

④ 壬午年(1702) 삼읍 결실총수

唐金橘 1,050개, 柑子 48,947개, 金橘 10,831개, 乳柑 4,785개, 洞庭橘 3,364개, 山橘 185,455개, 青橘 70,438개, 柚子 22,041개, 唐柚子 9,533개, 橙子橘 4,369개, 右金橘 1,021개, 梔子 17,900개, 枳殼 16,034개, 枳實 2,225개

③ 18세기 말 - 『濟州大靜旌義邑誌』(正祖 17년, 1793년으로 추정)

<표 2> 18세기 말 제주도 진상의 내역

구 분	내 역
正朝 誕日 冬至 (三名日進上)	方物 結弓 獐皮 각 25량 物膳 無
2月令	薦新青橘 270개 各殿宮橘 510개 槌嫂 113침 條嫂 113침 引嫂 30줄
3月令	槌嫂 113침 引嫂 27줄
4月令	槌嫂 245침 引嫂 54줄 菓古 12두
5月令	槌嫂 245침 引嫂 54줄
6月令	槌嫂 190침 引嫂 54줄 烏賊魚 73침
7月令	槌嫂 189침 引嫂 54줄 烏賊魚 139침
8月令	槌嫂 189침 引嫂 54줄 烏賊魚 88침 櫃子 12두
9月令	槌嫂 139침 引嫂 27줄 烏賊魚 64침 安息香 30근 半夏 23근 海棟皮 5근 石決明 1근 柚子 1,710개
10月令	薦新柑子 253개 唐金橘 287개 各殿宮柑子 11,210개 唐金橘 1,380개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구 분	내 역
11月令	薦新乳柑 306개 洞庭橘 288개 唐柚子 84개 各殿宮乳柑 2,340개 洞庭橘 2,550개 柑子 19,790개 山橘 700개 大橘·小橘·唐柚子는 소결에 따라 봉진
12月令	菓古 4두 白蠟 24편 木櫨子 4,000개 梔子 112개 麝子獐皮 10령 陳皮 55근 靑皮 27근 橘核 4냥 香附子 70근 樞實 2근 無患子 8냥 石斛 8냥 枳殼 20근 棟斤 2근2냥 枳實 5근 橘葉 5근 棟實 2냥 厚朴 30근
牧使到任進上	白蠟 24편
遞任進上	馬 3필 白蠟 48편 鹿舌 64개 鹿尾 64개 鹿부(?) 脯 64조 鹿長脯 64조 筒箇 20부 梔子 33근 中鹿皮 30령 小鹿皮 22령
進上馬牛 및 기타	進上年例馬 8필 三名日進上馬 60필 歲貢馬 200필 凶咎馬 駑駘馬 각 10필 別御乘馬 10필 (3년 1봉) 差備馬 60필 (3년 1봉) 甲馬 200필 (3년 1봉) 監牧官年例馬 2필 (間年封) 祭享黑牛 40수

③ 19세기 전반 - 「耽羅事例」(純祖 27년, 1824년 이후 시기로 추정, 「各司謄錄」 54에 수록)

<표 3> 19세기 전반 제주도 진상의 내역

구 분	내 역
到任進上	白蠟 24편
2月令	薦新青橘 306개 進上靑橘 510개 梔蠟 107첩 條蠟 107첩 引蠟 32 줄
3月令	梔蠟 107첩 引蠟 29줄
4月令	菓古 12두 梔蠟 235첩 引蠟 58줄
5月令	梔蠟 235첩 引蠟 58줄
6月令	烏賊魚 69첩 梔蠟 178첩 引蠟 57줄
7月令	烏賊魚 135첩 梔蠟 177첩 引蠟 57줄
8月令	烏賊魚 85첩 梔蠟 176첩 引蠟 57줄 權子 15두 半夏 25근 石決明 2근
9月令	烏賊魚 60첩 梔蠟 132첩 引蠟 29줄 柚子 1,440개
10-11月令(橘果 20運 進上)	薦新唐金橘 319개 進上唐金橘 1,380개 薦新柑子 281개 進上柑子 28,060개 薦新洞庭橘 324개 進上洞庭橘 2,630개 薦新乳柑 342개 進上乳柑 2,420개 山橘 580개 大橘 小橘 唐柚子는 소결에 따라 봉진
12月令(歲抄進 上)	白蠟 24편 新菓古 4두8승 梔子 116근 麝子獐皮 11령 陳皮 48근 香附子 70근 橘核 7냥 無患子 12냥 樞實 3근 石斛 11두 枳實 7근 厚朴 32근 木櫨子 4,400개 結造 2사

구 분	내 역
三名日進上	結弓 獐皮 75령
遞任進上	馬 3필 白蠟 48편 筒箇 20부 梔子 33근 中鹿皮 30령 小鹿皮 25령
進上馬牛 및 기타	進上年例馬 8필 三名日馬 60필 歲貢馬 200필 凶咎馬 駑駘馬 各 10필 黑牛 42수 別御乘馬 20필 差備馬 80필 山屯甲馬 200필 騎鞍 10부 紅馬裝 3부 紅鞍 6부 鹿皮鞍子 6부 盤杠木 20주 進上魚鱈
四名日祭需	每名日全鱈 4척 涼太 4죽5립 脯 海蔘 2두3승 全鱈 中木 7필9척 櫃子 5두6승 菓古 14두

④ 19세기 중반 - 「耽營事例」(철종 5년, 1854년 직후 시기로 추정)

<표 4> 19세기 중반 제주도 진상의 내역

구 분	내 역
到任進上	白蠟 24편
2月令	薦新青橘 324개 進上青橘 535개 棗鱈 131척 條鱈 131척 引鱈 32줄
3月令	棗鱈 131척 引鱈 29줄
4月令	菓古 14두5승 棗鱈 284척 引鱈 58줄
5月令	棗鱈 284척 引鱈 58줄
6月令	烏賊魚 83척 棗鱈 216척 引鱈 57줄
7月令	烏賊魚 159척 棗鱈 215척 引鱈 57줄
8月令	烏賊魚 99척 棗鱈 214척 引鱈 57줄 櫃子 18두5승 半夏 25근 石決明 2근 海棟皮 6근
9月令	烏賊魚 73척 棗鱈 155척 引鱈 29줄 安息香 32근 柚子 1,640개
10-11月令(橘果 20運 進上)	薦新唐金橘 288개 進上唐金橘 1,490개 薦新柑子 252개 進上柑子 12,420개 唐柑子是 所結에 따라 봉진. 8運 薦新乳柑 324개 進上乳柑 1,145개 薦新洞庭橘 324개 進上洞庭橘 1,354개 柑子 11,790개. 末運 薦新唐柚子 90개 進上乳柑 900개 洞庭橘 1,020개 柑子 10,440개 山橘 690개. 大橘 小橘 唐柚子는 所結에 따라 봉진
12月令(歲抄進上)	白蠟 24편 新菓古 5두9승 梔子 116근 梘子獐皮 11령 陳皮 48근 靑皮 30근 香附子 78근 橘核 7냥 無患子 12냥 櫃實 3근 石斛 11냥 枳實 6근 厚朴 32근 棟斤 1근4냥 枳殼 21근 棟實 4냥 橘葉 6근 木櫛子 4,400개 細涼臺 10립
三名日進上	結弓 獐皮 75령
遞任進上	馬 3필 白蠟 48편 獐皮 50령 梔子 33근 中鹿皮 30령 小鹿皮 25령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구 분	내 역
進上馬牛 및 기타	進上年例馬 8필 三名日進上馬 60필 歲貢馬 200필 凶咎馬 駕駘馬 각 10필 黑牛 42수 別御乘馬 20필 差備馬 80필 山馬 200필 騎鞍 10부 紅馬裝 3부 紅鞍 6부 鹿皮鞍子 6부 轡杠子 20주
四名日祭需	每日全饗 4첩 涼臺 4축5립 脯價米 4석 海蔘 2두4승 全饗添加木 12필 正木 7필9척 櫃子 5두6승 菓古 14두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제주도의 진상은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매해 동지와 정조를 맞이하여 연례적으로 말과 결궁, 장피 등이 봉진되었다. 그리고 2월부터 9월까지의 전복, 오징어 등 해산물과 비자, 해동피 등 약재류가 주로 봉진되었다. 또한 10월과 11월에는 굴과를 20운에 걸쳐서 천신용과 진상용으로 나누어서 봉진하였다. 12월에는 세초진상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약재류가 봉진되었다. 그리고 목사의 도입과 체임시에 말과 백랍 등이 봉진되었으며, 그외에도 馬·牛·鹿류가 수시로 상납되었다.

위에서 정리한 조선후기 제주도의 진상 부담액수를 시대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마우류나 약재류의 부담은 시기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복류의 경우에는 18세기 말에 들어와서 전시기보다 절반 가량 그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굴류의 경우에는 17세기 중반까지도 상당히 커다란 부담이었으나, 18세기로 접어들면서 그 부담이 반감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부담의 감소 현상은 19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대체로 19세기에 들어오면 명목상의 진상 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상 액수의 감소를 초래하였던 원인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를 주목하여 보자.

C-① 정조대 濟州어사 박천형의 별단 -

그 하나는 橘柚은 私園을 침범하지 말도록 논하였는데, 그 맺힌 과일을 세어서 스스로 떨어진 과일 값까지 징수하니 그 索賂를 걱정하여서 굴나무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얼마 안되어 굴이 없어질 것입니다. 청컨대 횡령하는 폐습을 엄금하십시오. 혹 흉작의 해를 당하면 후하게 값을 주어 사도록 하고, 삼읍에 심은 굴나무 수를 연말에 京

<표 5> 조선후기 제주도 진상 액수의 시대별 비교

연 도 품목(단위)		①1601	②1653	③1703	④1793(?)	⑤1824(?)	⑥1854(?)
		馬·牛· 鹿類	말(필) 黑牛(수) 獐·鹿皮(령)	? ? 123	178 ? 123	453 20 100-110	379 40 135
魚類	槌鱧(첩)	3,030	4,918	3,900여	1,423	1,347	1,630
	條鱧(첩)	230	265	260여	113	107	131
	引鱧(첩)	910	1,115	1,100여	354	377	377
	烏賊魚(첩)	680	1,075	860여	364	349	414
橘類	柚子(개)	1,595	?	1,460	1,710	1,440	1,640
	柑子(개)	31,525	63,680	25,842	31,253	28,341	34,902
	金橘(개)	3,420	2,680	900	.	.	.
	乳柑(개)	4,290	5,000	4,785	2,646	2,762	2,369
	洞庭橘(개)	6,490	5,060	2,804	2,838	2,954	2,698
	山橘(개)	1,040	760	828	700	580	690
	青橘(개)	3,330	1,250	876	780	816	859
	唐金橘(개)	.	.	678	1,667	1,699	1,778
藥材類	白蠟(편)	92	90		96	96	96
	葉古(두/승)	35	2석 12/7		16	16/8	20/4
	梔子(근)	150	160	112	145	149	149
	陳皮(근)		48	48	55	48	48
	青皮(근)		30	30	27		30
	香附子(근)		78		70	70	78
	無患子(냥)		8		8	12	12
	石斛(냥)		11		8	11	11
	枳實(근)		6		5	7	6
	厚朴(근)		32		30	32	32

(근거 자료 - ① 「남사록」 ② 「耽羅志」 ③ 「南宦博物」·「耽羅巡歷圖」 ④ 「濟州大靜旌義邑誌」 ⑤ 「耽羅事例」 ⑥ 「耽營事例」)

시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이에 하교하기를 ‘橘柚의 진공은 위로
는 薦獻에 쓰이고 아래로는 頒宜의 수요에 관계되는 것인데, 근래 진
공하는 명색이 항식에는 불충분하다. 公果園의 과물은 다 소비하여
버리고, 민간의 과실을 매양 횡침한다고 하니, 이 역시 기강이 있다
고 하겠느냐. 따라서 후에 민간의 과실을 따서 진공하는 일이 있다면
그 때의 목사부터 마땅히 증률로 다스릴 것을 본사에서 엄칙하라’ 하
였다(『正祖實錄』 正祖 6년 정월 신해조)

② 현종 7년(1841)

삼읍 과원을 보고, 將吏를 摘奸하고, 전기(밭기, 목록의 뜻)를 회고
한 즉 修治의 勤慢과 橘木의 株數와 直卒의 多寡가 소연히 헤아려질
수 있다. 본현(대정현) 6과원은 단지 1명의 줄이 춘추로 實役함으로
써 그 담당을 이겨낼 수 없다고들 한다. 막중한 공현 지역으로서 만
약 소홀함이 있다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또한 (대정)현 과원 직졸
의 수가 營案에 실려 있는 것을 살펴보면, 고둔원 줄이 7명, 법화원
줄이 6명, 동수원 줄이 5명, 암림원 줄이 3명, 남과·읍과 양원 줄
이 각 2명인데, 오늘날 該色驥가 무난히 쉽게 옮긴다(도망친다). 公
果園이 결국 空葉之境에 이른다(『耽營關報錄』 辛丑 4월 13일 甘結大
靜縣條)

③ 현종 9년(1843)

2월 초3일 兩邑 果園直 등의 호소에 따라서 節目을 成給하여 定式事
로 삼았다. 橘果의 計數는 오로지 진상을 증한 것으로 삼고, 상납
후 나머지가 있으면 該色에게 부쳐서 任悅으로 삼아서 이미 流來之
例를 이룸으로써 該色任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計數之時에는 매번
濫執을 걱정하였고, 한 번 장부에 오르면 반드시 거두었으므로, 집
을 팔고 재산을 탕진하는 폐단이 있어 왔다. 果直이라 칭하는 것은
고역으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피역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
이다. 오늘날 정의현의 과직들이 호소한 것에 따라서 다시 그 이면
을 자세히 알면, 원 계수 외에 또 본현에 바치는 橘皮 약 10근 및
營監考가 거두는 진상한 나머지 굵이 매 10개 당 2개를 더한다고 한
다. 모두 계수할 때 이미 이 수로써 除給하지 않으면 다시 白徵하
고, 혹은 거두는 것을 그친다 하여도 나머지가 있음을 우려하여
明文이 없고 원한이 그쳐짐이 없다(『耽羅錄』 下, 癸卯 2월 초3일조)

즉, 이미 정조대 초기로부터 공과원의 굵이 부족하여 사과원의 굵까지도 봉
진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①). 그러므로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전에
비해서 공과원의 굵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과

원의 생산이 감소한 이유는 대체로 과원직의 역을 담당하던 계층의 민인들이 피역을 일삼았던 데 있었지 않았나 한다(C-②·③). 이러한 폐단은 뒤에서 보듯이, 보민고·평역고 등의 운영을 통하여 진상 품목을 충당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Ⅲ. 濟州 지역 進上 이행의 실태

— 「濟州啓錄」을 중심으로 —

「濟州啓錄」에는 진상에 관련된 보고 사항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당시 진상에 차질이 생겼던 품목을 위주로 하여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당시 제주도의 진상 이행 실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발표에서는 「濟州啓錄」의 전체 내용 가운데 憲宗 12년(1846) 2월 4일부터 哲宗 9년(1858) 10월 2일까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시기는 삼정의 문란이 극심하였던 세도정치의 절정기였고, 1862년 壬戌民亂이 발생하기 직전이었다. 따라서 대원군 집권 이전 19세기의 상황과 임술민란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귤 진상

「濟州啓錄」의 진상 보고 내용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총 55개 조 가운데 47개 조를 차지). 이는 귤 진상이 중앙정부에서 중시되었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19세기에 들어와서 귤 진상이 힘들어졌다는 사실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濟州啓錄」에 들어 있는 귤 진상의 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년 8월(음력 - 이하 같음)에 橘樹의 작황을 조사하고, 귤의 수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였다(뒤의 <표6> 참조). 제주목사가 州城 근처의 과원을 직접 시찰하고, 遠村에는 樞裨를 파견하여 일일이 과실 수를 조사하였다.

<표6>을 보면, 당시 각 귤의 생산량이 진상 규정 액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정 액수 - 唐金橘 1,699개, 柑子 28,341개, 洞庭橘 2,954개, 乳柑 2,762개, 山橘 580개, 青橘 816개, 柚子 1,440개 : 「耽羅事例」)

<표 6> 19세기 중반 제주도 귤의 종류와 생산량

연도 종류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7
唐金橘	77	135	151	153	132	173	172	202	118	51
柑子	.	112	67	85	.	75	55	67	76	.
乳柑	31	203	52	222	388	245	310	219	245	46
洞庭橘	1,465	550	1,196	1,100	1,192	332	340	1,962	1,641	.
大橘	20	7	13	28	.	12	15	17	29	.
小橘	.	210	69	34	23	17	56	78	38	25
金橘	558	3,907	3,640	6,045	1,289	3,750	4,025	4,034	3,747	3,746
青橘	1,366	1,363	1,212	1,350	1,499	1,550	1,250	1,550	1,612	1,059
唐柚子	697	812	707	765	595	614	723	812	1,048	504
橙子橘	1,189	2,510	165	1,150	972	683	2,415	1,028	971	672
柚子	2,105	93,390	1,900	1,909	1,618	1,620	1,565	1,903	1,761	2,258
山橘	100,105	10,050	91,050	100,100	71,230	80,540	70,510	100,650	91,305	75,003
梔子	11,502	4,015	10,151	10,450	13,000	10,250	11,050	12,030	12,190	15,441
枳殼	1,851	.	1,505	1,510	1,490	1,516	1,210	1,320	1,430	1,700
唐柑子	.	.	55	62	15	24	25	53	31	62

2) 9月令 - 매년 9월, 제일 먼저 柚子를 봉진하였다.

3) 10月令 - 매년 10월 그믐, 唐金橘을 薦新(祭享進上) 용으로 禮曹에 보냈다(肇慶廟, 宗廟, 景慕宮, 孝定殿, 山陵, 徽定殿의 순서). 그리고 物膳進上은 초운에서 7운까지 이루어졌는데, 물선진상용 귤의 종류는 唐金橘, 金橘, 柑子 등이었다. 1848년 이후로는 唐柑子도 봉진되었음이 확인된다(『濟州啓錄』憲宗 13년 9월 초4일조; 哲宗 즉위년 9월 28일조). 그러나 이 시기 唐金橘, 柑子の 생산이 저조하여 매년 代封이 행하여졌다. 주로 唐金橘은 金橘로, 柑子는 山橘로 대봉되었다.

4) 11月令 - 매년 11월 그믐, 乳柑, 洞庭橘, 唐柚子, 大橘, 小橘 등이 薦新 용과 물선진상용(8운-20운)으로 봉진되었다.

乳柑의 경우 생산이 저조하여 거의 모두 薦新용으로 소모되었다. 나머지 물선진상은 金橘이나 山橘로 대봉되었다. 洞庭橘은 우선 薦新용으로 봉진하고, 나머지는 물선진상으로서 대전, 대왕대비전, 왕대비전, 중궁전 등에 보내어졌다. 그러나 洞庭橘의 수효도 부족하여 거의 橙子橘이나 山橘로 대봉하였다.

5) 2月令-매년 2월, 靑橘이 薦新용과 물선진상용으로 봉진되었다. 靑橘의 경우 다른 종류의 꺾과는 달리, 규정 액수에 부족하지 않게 보내어졌다(薦新 - 종묘 306개, 효정전 170개, 산릉 170개, 휘정전 18개 ; 물선진상 - 대전 190개, 대왕대비전 115개, 왕대비전 115개, 대비전 115개).

2. 약재류 진상(55개 조 가운데 6개 조)

12월 그믐에 봉진하는 세초진상 약재 가운데 靑皮와 乾正이 부족하여 자주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 그리고 8月令 櫃子가 익지 않아 봉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濟州啓錄』 철종 2년 8월 19일조). 그러나 전체적으로 약재 진상은 무리없이 이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해산물 진상(55개 조 가운데 1개 조)

6月令 해산물 가운데 오징어의 경우, 날씨가 고르지 못하여 규정 액수를 채우지 못하기도 하였다(『濟州啓錄』 철종 7년 6월 21일조). 해산물의 경우도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봉진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4. 馬牛類 진상(55개 조 가운데 1개 조)

黑牛 42수가 윤4月令 진상물과 함께 봉진되는 과정에서 진상선이 강진 앞바다에서 침몰하였음이 보고되었다(『濟州啓錄』 헌종 15년 5월 24일조). 이러한 극히 이례적인 사실을 제외하면, 마우류의 진상은 어김없이 이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進上의 부담과 濟州民

18세기까지 제주도의 진상물은 주로 牧子, 捕作人, 潛女, 藥漢 등의 고역담당자들에 의해서 직접 충당되었다. 이 방식 외에도 寺奴婢를 비롯한 公奴婢의 身賁를 기반으로 하여 진상물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진상의 막중한 부담은 결국 도민들의 피역 현상을 가져왔고,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8세기 이후 진상의 고역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平役庫, 補民庫 등과 같은 지방 재정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즉, 지방관아의 재정으로

고역 담당자들에게 지원을 한다거나, 특정 품목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입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말한다.

- D-① 英祖 14년, 平役廳(平役庫)을 설치하고 除番한 各色軍官, 各樣生들로부터 받아들이던 評역미를 포작인들에게 지급토록 조치함(『濟州邑誌』 濟州牧, 均稅條).
- ② 正祖 15년, 목자 매인 당 評역고미 1석 7두를 지급해서 故失馬 발생에 따른 폐단을 제거하고자 함(『備邊司謄錄』 178, 正祖 15년 辛亥, 2월 20일).
- E-① 본 도에서 상평청에 회록한 모전미 3백 석을 특별히 획급하면 이는 곧 세 읍에서 바치는 槌餼·引餼·條餼 및 오징어를 값을 주고서 사들이는 것이 되며, 회전북·분과·부鬻·곽이만을 분정하여 받아서 조정의 공출하는 뜻을 보인다면 어쩌면 지탱해 나갈 것입니다. (중략) 묘당으로 하여금 그 예를 뽑아 품해 처리하도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아뉘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肅宗實錄』 肅宗 28년 7월 辛酉조 - 이형상 목사의 건의)
- ② 正祖 15년, 대정현의 포작인이 내는 地裝餼, 馬頭餼, 京主人役價餼의 가격을 米價로 환산하여 評역미로 구입함(『辛亥大靜縣釐正節目』).
- ③ 憲宗 9년 경, 포작인이 부담한 진상역은 禮吏處가 대행하고, 관아용은 私質로 충당함(『耽羅誌草本』 濟州牧, 工匠條, 浦作).

특히 보민고의 경우 원래 白蠟과 葉古 진상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英祖 32년(1756)에 목사 尹耆東이 설치한 것으로서, 19세기에 와서는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었다. 즉, 哲宗 5년(1854)에는 單恩庫와 僦役庫의 쌀을 보민고로 移付시켜, 대정·정의현의 進上魚餼價와 白蠟·葉古의 진상가를 지급하였다(『耽營事例』 補民庫條). 그리고 憲宗 12년(1846)에는 賑恤庫 모조 일부를 보민고에 획부토록 하고, 이를 통하여 式年代貢馬 운송에 따른 船格의 格軍雇價를 해결하려고도 하였다.

위와 같이 評역고와 보민고는 원래 均역이나 진상에 따른 역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운영되었으나, 19세기 중반으로 오면서 지방관아의 재정용을 이루는 원천이 되어갔다. 따라서 지방관아에서는 부족한 재정 상태를 만회하기 위하여 評역고, 보민고 등의 확대 운영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도민들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었다.

1862년 邑稅制주민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評역의 폐단이었음이 다음

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즉, 임술제주민란 후 按察使로 파견되었던 李建弼이 서울에 돌아와서 국왕에게 건의한 내용인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아직도 진상의 폐단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18개조 가운데 진상과 관련된 것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3. 평역은 쌀 6두 또는 전 1냥 9전 2분으로 영구히 정하여 공히 운용할 것.
4. 평역의 규정 액수에 부족되는 쌀은 이물 場稅와 火田稅에서 보충할 것.
5. 평역에 있어 60살이 못되는 자가 빠지는 것과 15살이 못되는 자가 강제로 들어가는 폐단을 엄단할 것.
9. 목장의 대소에 따라서 진상 마필 수를 다시 정하고, 牧子가 뇌물을 바치고 빠지는 것을 막을 것.
10. 貢馬를 바칠 때 개인소유 말을 사서 보충하는 데서 일어나는 폐단을 없앨 것.
13. 관에서 각 포구의 潛女에게 收稅를 빙자하여 미역 등을 강제로 팔게 하여 私利를 취하는 폐를 혁파할 것.
15. 선박을 진상물 운반 공행을 이유로 무단으로 징발하지 말고 규식을 만들 것.

(『日省錄』 哲宗 14年 6月 2日, 李建弼의 書啓別單)

또한 임술민란의 발생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火場稅의 수탈 문제도 진상 부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상과 관련된 평역고, 보민고 등의 지방 관아의 재정이 부실하여지자,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이 개간되고 있던 화전·목장전에 대한 수탈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正祖 18년(1794)에 各場 犯耕處에 대한 徵穀을 단행해서 이를 馬監, 牧子의 料米로 대체하였다가, 正祖 23년(1799)에 公用, 즉 지방재정으로 전환시켰는데(『耽羅誌草本』 濟州牧, 倉庫條, 場稅庫), 이 사실은 이미 18세기 말에 제주관아의 재정이 빈약하였음을 보여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목장 내의 화전 경영이 허용되면서 화전은 범경치가 아닌 수세지로 인정되어갔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만회를 위하여 관아에서는 기존의 牧子들에게 경작이 허용되었던 場田의 場稅와 새로운 개간지인 火田에 대한 火田稅의 수탈을 강화하여 나아갔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서계별단 조목 중 다음의 내용이 주목된다.

6. 장세의 총액을 880석으로 정하고 더 많이 받지 못하게 막을 것.
7. 화전세의 총액을 450석으로 한정하고 관의 불법을 막을 것.

즉, 장세와 화전세를 합하여 1,330석인데, 이는 憲宗代(1840년대) 3읍의 총 전세 192석 3두(『耽羅誌草本』)에 비하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액수도 민란이 진압된 이후 민심 수습의 차원에서 정해진 액수이므로, 그 이전에는 수천 석이 執卜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화전민들의 주도로 입술제주민란이 발생하고, 일반도민들까지 민란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이상에서 19세기 제주도 진상의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 진상은 원칙적으로 공물과 같이 토지세로 전환되어 갔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조선후기에 와서도 진상의 부담은 개개 민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진상품의 종류와 내용은 조선전기에 비해서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19세기에 들어와서 橘果類의 진상 액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 결과, 『제주계록』에는 귤과류의 진상 이행에 대한 보고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19세기에 와서도 정기적인 진상은 꾸준히 이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까지 제주도의 진상물은 소위 ‘六苦役’층에 의해서 주로 조달되었다. 그리고 寺奴婢와 같은 공노비층이 관아에 바치는 身貢 또한 진상물 마련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결과, 18세기에 이미 광범위한 피역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이들의 역할을 완화시키고자 均役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특정 품목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와 관련하여 설치된 平役庫, 補民庫 등의 부실 운영으로 지방재정이 부족하여지자, 관에서는 새로운 세원을 찾아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당시 새로이 개간되던 牧場田, 火田 등에 대해서 가혹한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862년의 입술제주민란에 화전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19세기 제주도의 진상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다 보니 각종 진상 물종을 부담하였던 도민의 구체적 실태에 대해서

는 詳論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제주도의 진상은 환곡의 운영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재정과 진상과의 연관성을 해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후일의 논고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